
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(안 제19조제1항 신설 등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인용조문의 오류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화 실)